

경북 울진군 울진읍 새마실5길 13,  
다세대주택 A동 103호(읍내리, 한국통신사원아파트)

원고(상고인  
)

임그루



36322

2060617-649822 ↓

(민사과 특별1부(아))

2017-035-72966-006

이 사건의 사건번호는 대법원

## 2017두 7296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

예정 기일 :

담당재판부 : 특별1부(아)

법원사무관 이영표

직통 전화 : 3480-1364

팩 스 :

e-mail :

재판부 이메일 주소는 문의사항을 연락하기 위한 연락처이므로 재판부 이메일 주소로 전자  
문서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서면을 제출한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사건진행과 관련된 정보(송달과 확정내역 포함)는 대한민국법원 홈페이지

(<http://www.scourt.go.kr>) '나의사건검색' 란에서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.

다만, 부동산등경매사건은 대한민국법원 경매정보홈페이지(<http://www.courtauction.go.kr>)  
경매사건검색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.



대 법 원

제 1 부

판 결

사 건 2017두7296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

원고(재심원고), 상고인

임그루

경북 울진군 울진읍 새마실5길 13, 에이동 103호

피고(재심피고), 피상고인

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

소송수행자 강영민

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케이티

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90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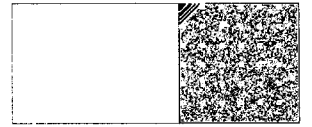
대표이사 황창규

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. 11. 24. 선고 2017재누139 판결

주 문

상고를 기각한다.

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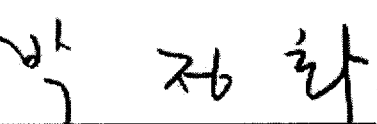

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(재심원고)가 부담한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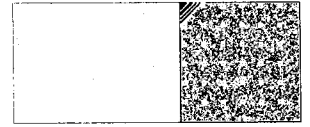
# 이 유

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,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,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,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2018. 2. 28.

재판장	대법관	박상옥		
	대법관	김 신		
	대법관	이기택		
주 심	대법관	박정화		





# 정본입니다.

2018. 3. 2.

대법원

법원사무관 이영표



※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번호조회 메뉴를 이용하거나, 담당 재판부에 대한 문의를 통하여 이 문서 하단에 표시된 발급번호를 조회하시면, 문서의 위,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